

해외(어학)연수학점인정규정

5-1-45

규정번호 5-1-45
제정일자 2019.2.25
최근개정 2026.7.20
개정차수 4차 개정
관리부서 글로벌교육팀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 우리대학 학생들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자기 개발과 진로 개척, 취업역량 강화에 필요한 국제이해와 외국어향상 욕구를 수용하고 수강과목을 다양화하고자 한다.

제 2 조(적용대상)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제 3 조(성적처리) 교양 2학점(과목명 : 해외(어학)연수)으로 인정하며, 성적처리는 PASS로 한다.

제4조(운영방안) ① “해외(어학)연수” 과목은 별도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다.(개정 2019.10.21.)

② “해외(어학)연수”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본 규정 제6조(제출서류) ①~④항을 구비하여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9.10.21.)

③ 각 학과는 신청자의 학점인정 여부를 판단하여, 학점 인정대상자를 매학기 신청기한 내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26.7.20.)

제 5 조(인정기준) ① 재학생이 방학 중에 실시한 해외(어학)연수만 인정되며, 실시된 당해학기의 성적에 반영한다.(개정 2019.10.21.)

② 졸업 시까지 한 차례에 한정하여 2학점 인정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③ 해외(어학)연수 프로그램 이수증명서에 명시된 기간이 2주 이상이어야 한다.(개정 2019.10.21.)

④ 졸업학기 중의 해외(어학)연수는 인정받지 못한다. 2년제 학과는 2학년 여름방학, 3년제 학과는 3학년 여름방학까지만 인정한다.(개정 2019.10.21.)

⑤ “해외(어학)연수” 학점은 학칙 제24조 제③항의 “한 학기 23학점 이내 학점취득”이라는 규정에 제한받지 않는다.(개정 2019.10.21.)

⑥ 해외어학연수는 협약 체결된 대학 및 기관(기업)에 한하고, 정부(산하기관 포함)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 정한다.

제 6 조(제출서류) ① 해당 (외국어)학연수기관이 발행한 (어학)연수프로그램 이수증명서 1부(개정 2019.10.21.)

② (해외)어학연수보고서(별첨서식 제1호) 1부.(개정 2019.10.21.)

③ 출입국 사실 증명원 1부 또는 출입국기간이 명시된 여권사본

④ 학점인정서(별첨서식 제2호) 1부.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1-45 해외(어학)연수학점인정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제3항)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1-45 해외(어학)연수학점인정규정

(별지서식 제1호)

해 외 어 학 연 수 보 고 서			
어학연수국가		연 수 기 간	. . . 부터 . . . 까지 (개월 일간)
어학연수기관			
어학연수내용 (객관적으로 작성)			
연수소감 (구체적으로 작성)			
비고			

$\overline{00}$
 $\overline{01}$
 $\overline{11}$
 $\overline{10}$

학 과 :

: 500

후 : 11월

성명 :

명지전문대학 교무처장 귀하

확인자 :

학과장

(인)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1-45 해외(어학)연수학점인정규정

(별지서식 제2호)

학 점 인 정 서					
성 명		주 민 등록번호		학 번	
해외어학연수 국가/기관					
연수기간					
학점인정	() 학년 () 학기 교양 2학점으로 인정				

위와 같이 해외어학연수에 따라 학점을 인정합니다.

100 100 100

학 과 명 :

학 과 장 : (인)